업 무 협 약 서

십대여성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성매매피해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및 법률개정연구모임 프로젝트'(이하 '본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진행함에 있어 사단법인 선(이하 '선'이라 한다)은 센터에서 필요한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적 자문 및 소요되는 일정 경비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바, 이에 양 당사자는 2014년 5월 22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1. 목적

본 협약은 센터가 본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적 자문 및 소요되는 일정 경비를 선이 지원함을 정함으로써 본건 프로젝트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센터의 업무

(1) 센터는 본건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과 선 소속 변호사의 참여를 선에게 요청한다.
(2) 센터는 본건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에게 요청한다.

3. 선의 업무

(1) 선은 센터의 요청에 따라 법적 자문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청받은 변호사를 본건 프로젝트에 지원한다.
(2) 선은 센터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4. 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건 프로젝트의 진행기간으로 한다.

5.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첫머리 기재일자에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2014년 5월 22일

사단법인 선
서울시 서초구 [redacted]
이사장 이 태 운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 강서구 [redacted]
대표 조 진 경